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8일, 박찬대의원 외 169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 9. 4.) 상정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1소위(2024. 9. 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4. 9. 1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5차 전체회의(2024. 9. 1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찬대의원)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대통령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 받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신원불상의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하였으며,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던 중, 3월 10일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 단행한 바, 이러한 출국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음.

또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

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제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임.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관련 기관에서의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 등을 규정하였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음.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3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 파견 공무원 40인으로, 이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특별검사보 2인, 파견검사 5인, 특별수사관 30인, 파견공무원 30인)보다 큰데, 이는 수사 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음.

수사기간은 70일로 하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박균택 위원)

- 대부분의 사건은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한다고 하면 유일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법을 존중하여 법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한다고 하면 해당 조항을 없앨 수도 있겠다고 생각함.

(전현희 위원)

- 특검법의 취지는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때 특별법을 만들어 특검을 실시하는 것인데, 현재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매우 높으므로 독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한 것임.
- 사실상 권력의 핵심부를 수사하는 차원에 있어 특검의 필요성, 그리고 특검의 취지가 대통령을 향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이 사안에 대해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이든,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이든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함.

(서영교 위원)

- 여당 대표가 제3자 추천을 받겠다고 하여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함.
- 과거 대북송금 특검, 노무현 대통령 측근 특검, BBK 특검, 내곡동 특검, 세월호 특검 등도 합의되지 않았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승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유상범 위원)

-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은 데다가 비토권을 규정해서 유례 없는 법안을 만들었음.
-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이야기 했으니 그대로 낸 것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대로 실질적인 특검도 아님.

(김승원 위원)

-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되어 특검이 시행되어야 함.
- 현재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매우 높으므로 독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